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95,100,205	38,853,006
일반회계	1,153,455,709	34,603,671
특별회계	141,644,496	4,249,335
공기업특별회계	113,799,490	3,413,9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17,325	1,611,5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915,999	1,317,48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166,166	484,985
기타특별회계	27,845,006	835,35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17	5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39,847	94,19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30,256	96,908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10,800,489	324,01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672,597	320,178

제 2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398,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8 조 (간주처리)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